

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6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2022년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, 보건의료원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원장 직급채정 협의 결과반영 및 부서와 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반영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기구 조정 현황

현 행	개 편	비 고
본청 2국 1실 15과(89담당)	본청 2국 1실 15과(89담당)	-
직속기관 5과(29담당)	직속기관 6과(32담당)	+1과/+3담당
2사업소(4담당)	2사업소(4담당)	-
의회(1담당)	의회(1담당)	-
8읍면 1출장소(38담당)	8읍면 1출장소(38담당)	-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(관계법령 발췌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2.01.19.~01.29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#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보건사업과장”을 “보건정책과장, 건강증진과장”으로, 같은 항 및 제2항 중 “보건진료원”을 각각 “보건진료소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보건진료원”을 “보건진료소장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보건사업과장”을 “보건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②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보건사업과장”을 “건강증진과장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의료원장 등)</p> <p>① 의료원에 원장 및 <u>보건사업과</u>장, 진료지원과장을 두며, 보건지소에 지소장,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, 보건진료소에 <u>보건진료원</u>을 둔다.</p> <p>② 원장은 군수의, 과장, 지소장, 센터장과 <u>보건진료원</u>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</p> <p>제9조(소관사무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보건진료원</u>은 관할구역 안에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.</p>	<p>제8조(의료원장 등)</p> <p>① ----- 보건정책과장, 건강증진과장----- ----- 보건진료소장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보건진료소장----- -----.</p> <p>제9조(소관사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보건진료소장----- ----- -----.</p>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 (생략)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# □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제2조(국장 및 실·과장의 직급 등) ①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본청의 국장, 실·과장, 직속기관의 장 및 읍·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(생략)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과장 김진용
연락처	(033) 330 - 2210